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불법촬영물등에 의한 피해교원 지원 근거 신설 >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46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불법촬영물등에 의한 피해교원 지원 근거 신설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정준호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2024. 8. 30.
3. 회부연월일: 2024.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부 학생 사이에서 학교 내 교직원 등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성적 영상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되고 있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음.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격권 침해일 뿐 아니라 방기할 경우 학교폭력의 새로운 양태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됨.

그러나 현행법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요양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 삭제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방안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시켜 피해를 입힐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하여 관할청이 삭제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개인의 인격권을 더욱 보호하고 딥페이크영상 등 음란물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불법촬영물등에 의한 피해교원 지원 근거 신설

개정안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함)을 정보통신망에 유포시켜 피해를 입힐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하여 관할청이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 개인의 인격권을 더욱 보호하고 딥페이크영상 등 불법촬영물등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2(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관할청은 <u>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을 정보통신망에 유포시켜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u>

	<u>입힐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은 관할청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2024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허위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방식의 디지털 성범죄로, 학생 뿐만 아니라 교원에 대해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¹⁾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1) [학교 뱃페이커 성범죄 피해 현황]

피해 신고(건)				수사 의뢰(건)				삭제지원 연계(건) ¹⁾	피해자(명)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학생	교원	직원등
552	17	238	297	467	17	209	241	247	920	883	33	4

주: 1) 학교, 시·도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직접 삭제지원을 요청한 건수 제외

1. 2024.11.1. 기준

자료: 교육부

· 화상 · 음성 등을 촬영 · 녹화 · 녹음 ·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²⁾

이러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관할청과 그 학교의 장은 심리상담 등의 보호조치와 가해자로부터의 분리조치를 취하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보호조치 소요 비용은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규정함.³⁾

2)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위의 범위에는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가 포함됨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 화상 · 음성 등을 촬영 · 녹화 · 녹음 ·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3)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 · 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 ·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 ·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은 피해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한 심리적 회복 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한 상담·심리치료·소송 등의 비용 지원, 특별휴가 사용 등을 규정하는 한편,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요양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교원지위법」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제23조(특별휴가)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5) 「교원지위법」

제25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포된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관할청이 해당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인격권을 더욱 보호하고 불법촬영물등을 근절하려는 것임.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해 지원하는 것은 추가적인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함)」 등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안 개정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⁶⁾ 해당 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으로 규정되어, 해당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음.⁷⁾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등의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을 규정한 개정안과 현행 「성폭력방지법」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개정안 제20조의2는 지원 주체를 관할청으로 규정하고, 피해상황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포시켜 피해를 입힌 경우로 특정하고 있으며(제1항), 피해교원이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

한편, 현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지원 주체를 국가로 규정하고, 피해상황을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제1항), 직접 피해를 입은 지원 대상자뿐만 아니라 대리인 등도 요건을 갖추어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

또한 같은 조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없어도 수사기관의 삭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국가가 삭제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하는 내용(제3항),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4항 및 제5항).

7)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

[표 1]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현행 「성폭력방지법」 내용 비교

구분	「교원지위법 개정안」 제20조의2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현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¹⁾
지원 주체	(제1항) 관할청 : 국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 교육감 (「교원지위법」 제20조제1항)	(제1항) 국가
피해상황 및 지원	(제1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u>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이하 “촬영물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포시켜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입힐 경우,</u> 해당 교원 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 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u>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u> 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등”)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지원 요청자	(제2항) 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
국가의 직접지원 및 자료 보관	-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에 대해, 국가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하고,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분	「교원지위법 개정안」 제20조의2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현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¹⁾
지원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	—	(제4항) 촬영물등 삭제지원 소요 비용은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 (제5항) 국가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기타사항 위임	(제3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6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

주: 1) 위의 표는 현행 「성폭력방지법」을 기준으로 작성함

* 지원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삭제지원 대상을 “촬영물등”에서 “불법 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반영된 「성폭력방지법(법률 제20461호)」은 2024.10.16.에 개정되어 2025.4.17.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와 같이 현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개정안에 비하여 넓은 범위로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삭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는 피해교원에 대한 삭제지원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은 교원에 대한 상황을 특정하여 관할청이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성폭력방지법」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할청이 피해교원을 지원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개정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피해교원뿐만 아니라 피해교원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교원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 지원을 요청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조문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제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중검토 -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수사기관 등에서 영상물 삭제, 심리·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청에서 삭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원지위법」 제20조제1항제3호(“그 밖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 영상물 삭제 지원이 가능함에도 별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그 외 사안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 경기도교육청: 신중검토 - 개정안의 내용은 관할청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할청 역시 권한이 있는 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증설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촬영물 유포 발생 시 교원은 사설업체를 통하여 삭제한 후 가해학생 등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관할청에서는 교원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에 대하여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추가 지원은 불필요함.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중검토 - 교육청은 교육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영상물 삭제 지원이라는 행정 처리에 업무가 집중될 우려가 있으며, 기관 간 역할이 불분명함에 따라 오히려 업무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함. - 수사와 행정처리는 사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처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할청은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교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문 의 처

02)6788-5189

※ 참고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촬영물등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불법촬영물등 삭제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2. 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및 보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등 삭제 요청 및 확인·점검
4. 그 밖에 촬영물등 삭제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촬영물등 삭제 지원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구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10년 3. 그 밖에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 5년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의 수집 및 보관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게 구상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4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2. 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3. 촬영물등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4. 그 밖에 촬영물등 삭제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피해학생의 보호자이거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피해학생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청구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